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  
행정안전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6일, 김현정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9월 9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2차 행정안전위원회(2024.11.20.)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2025.9.18.)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5차 행정안전위원회(2025.9.22.)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김현정의원)

현재 금융위원회가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금융산업정책 기능이 금융감독정책 기능을 압도하여 엄정한 금융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제고하고, 국내 금융산업정책과 국제금융정책 기능을 통합하여 경제정책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유상조)

개정안은 안 제2조에서 현재 중앙행정기관인 금융위원회를 삭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고, 안 제27조에서는 기획재정부 소관 사무 중 ‘국제금융’을 ‘금융’으로 변경하고 있음.

2008년 이후 유지되고 있는 현행 금융정책 및 금융감독집행 기구 체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제기되어 왔음.

개편 필요성을 제기하는 주된 이유는, 금융위원회의 담당 정책 측면

에서, 금융산업의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는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보호가 목적인 금융감독정책은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하나, 금융위원회가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동시에 관장하고 있어 금융감독이 금융산업을 견제할 수 없고,

또한 금융감독 측면에서도 감독정책(금융위원회)과 감독집행(금융감독원)이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는바, 이로 인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고 금융사고의 책임을 서로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임.

동 개정안은 「정부조직법」에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안 제2조에서는 「정부조직법」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에서 현행 금융위원회를 삭제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위원회를 명시하고 있으며, 안 제27조에서는 금융위원회가 담당하던 국내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여 국내외 금융정책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국제금융과 국내금융 간 상호 업무 연계성을 강화하고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국가경제정책을 수립하도록 하려는 타당한 입법취지로 보임.

다만, 동 개정안의 심사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임.

첫째,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의 분리 필요성을 제기하는 의견들은, 금융감독기관의 법정형태와 관련하여 민간기구 편제의 타당성 여부에 대한 의견이 나뉘는 측면이 있음. 동 의견들에 따르면 금융감독

기관의 법적형태에 대하여 민간조직화, 전부 또는 일부 정부조직화 등 다양한 유형을 고려할 수 있어 각 유형들의 장단점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둘째, 동 개정안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동 법률안의 해당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심사 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4. 대체토론 요지

- 국내금융 기능의 재정경제부로의 이관은 금융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하는바, 해당 법률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대책이 없음.
- 금융감독위원회는 감독기능만 관장하도록 축소되는바, 기관의 성격을 기존 합의제 행정기관에서 ‘처’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6. 찬반토론의 요지

- 금융정책 부서와 금융감독 부서를 분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금융소비자를 더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금융소비자원을 두는 것이라고

생각함.

- 금융감독원 및 금융소비자원의 분리는 감독기관과 현장집행 감독기관을 분리하는 것인바, 그 필요성에 대한 이유가 제시돼야 함.
- 금융정책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금융감독기능은 금융감독위원회로 분리하는 이유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